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6.

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- □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안녕하십니까?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이 발의한
  「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
 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  최근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한
 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인해 남녀노소
  모든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,
  주요 대상 및 동기의 불특정에 따라
 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.
- □ 이와 관련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
  피해자 발생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,
  관련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정보교류 협력 등
  협력체계 조항을 신설하여, 정보교류와 협력 등에 대한
  실질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□ 이에 안 제6조의 경우,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에 대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·협력 등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- 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